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의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상 용어를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로 정비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관하여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00. 00. 시행)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판단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조, 4조, 5조)
결손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중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

체류 관련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

다.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 등(안 제5조의5)

명단공개 제외 대상인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고, 광역지자체 장이 관할 지자체 내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 넘는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손처분 자료”를 각각 “정리보류 자료”로,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결손처분 자료가”를 “정리보류 자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 자료를”을 “정리보류 자료를”로,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손처분 자료”를 “정리보류 자료”로,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를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중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의 체납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u>) (생략)	제3조(체납 또는 <u>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u>) (현행과 같음)
제4조(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u> (이하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u> ”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파일</u> (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u> 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체납 또는 <u>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u>) ① ----- ----- ----- --- <u>정리보류 자료</u> ----- --- <u>정리보류 자료</u> ----- ----- ----- <u>정리보류 자료파일</u> ----- ----- ----- <u>정리보류 자료</u> 가 --- -----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파일</u> 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 <u>정리보류</u> ----- ----- -----.
제5조(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u>)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u>결손처분 자료</u> 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제5조(체납 또는 <u>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u>) ① ----- ----- <u>정리보류</u> ----- ----- -----

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정리 보류 자료를 ----- ----- 정리 보류 자료파일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정리 보류 자료----- 납부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 정리 보류 ----- -----.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 허가 등“이란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① -- ----- ----- -----.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1.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의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의 체납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 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

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7